#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(배준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425

발의연월일: 2025. 5. 8.

발 의 자:배준영·강선영·김교흥

정일영 • 윤상현 • 허종식

박충권 • 박준태 • 조지연

유용원 • 이인선 • 모경종

김 건 의원(13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4위, 보유 선박수 세계 5위 등 해양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위상에도 불구하고 해양분쟁을 해결 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기구 등의 인프라가 미비하여 대 부분의 해상분쟁을 외국의 중재 제도나 재판에 의존함.

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'해사법원'을 설치하여 해양분쟁 발생 시 국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국부의 해외유출을 막고, 해사소송 전문인력을 양성하며, 해운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·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 맞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'해사법원'을 설치하 여 해사법원 및 그 지원에서 해사민사사건, 해사행정사건을, 해사법원 본원 항소부에서 해사민사사건·해사행정사건의 항소·항고사건을 심 판하게 하려는 것임(안 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9까지 신설 등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427호), 「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426호), 「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423호), 「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424호) 및 「해양사고의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422호)의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7종류"를 "8종류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"지방법원"을 "해사법원, 지방법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특허법원"을 "특허법원·해사법원"으로, "회생법원과 지방법원"을 "회생법원과 해사법원·지방법원"으로 한다.

#### 3의2. 해사법원

제5조제2항 중 "특허법원"을 "특허법원·해사법원"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"특허법원"을 "특허법원·해사법원"으로 한다.

제7조제3항 본문 중 "특허법원 및 행정법원"을 "특허법원·해사법원·행정법원 및 해사법원의 지원"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행정법원"을 각각 "해사법원, 행정법원 및 해사법원의 지원"으로 한다.

제9조의2제1항 중 "특허법원"을 "특허법원·해사법원"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"특허법원"을 "특허법원·해사법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사무국장"을 "고등법원의 사무국장" 등 합다.

제14조제1호 및 제2호 중 "특허법원"을 각각 "특허법원·해사법원"으

로 한다.

제3편에 제2장의2(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9까지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제2장의2 해사법원

- 제28조의5(해사법원장) ① 해사법원에 해사법원장을 둔다.
  - ② 해사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.
  - ③ 해사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  - ④ 해사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28조의6(부) ① 해사법원에 부(部)를 둔다.
  - ② 해사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.
- 제28조의7(지원) ① 해사법원의 지원에 지원장을 둔다.
  - ② 지원장은 판사로 보한다.
  - ③ 지원장은 소속 해사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  - ④ 해사법원의 지원에 부(部)를 둘 수 있다.
  - ⑤ 제4항에 따라 부를 두는 해사법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을 주용한다.

제28조의8(심판권) ① 해사법원은 다음의 해사사건을 심판한다.

- 1. 다음 각 목의 해사민사사건
  - 가. 「상법」 제4편제2장제4절(해상보험) 및 제5편(해상)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민사사건(외국법이 준거법인 사건을 포함 한다)
  - 나. 「선원법」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민사사건
  - 다.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사건 외에 선박(건조 중인 선박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항해, 선박채권 또는 그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, 선박의 충돌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에 관한 민사사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
- 2. 다음 각 목의 해사행정사건
  - 가. 해사항고소송: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양경찰청장(이하 "해사행정청"이라 하며, 해사행정청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,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)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
  - 나. 해사당사자소송: 해사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,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 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. 다만,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를 해양수산부, 해양경 찰청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.
- 3.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

- 4.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
- ② 해사법원의 항소부는 해사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의 판결·결정·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.
- ③ 해사민사소송에 관하여는 「민사소송법」을 준용하고, 해사행정소송에 관하여는 「행정소송법」을 준용한다. 이 경우 「민사소송법」상 "지방법원"은 "해사법원"으로 보고, 「행정소송법」상 "행정법원"은 "해사법원"으로 본다.
- 제28조의9(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) ① 제28조의8에 규정된 해사 사건과 관련되는 소송으로서 해사사건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송(이하 "관련청구소송"이라 한다)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 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이를 해사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.
  - ② 해사소송의 당사자는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, 해사법원은 다른 법원으로부터 관련청구소송이 이송되어 온 경우이를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.

제44조제2항 중 "특허법원장"을 "특허법원장, 해사법원장"으로, "고등법원 및 특허법원"을 "고등법원·특허법원 및 해사법원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법 시행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
서 이 법 시행일 전날 해사법원이 아닌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
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법원의 종류) ① 법원은 다	제3조(법원의 종류) ①
음의 <u>7종류</u> 로 한다.	<u>8종류</u>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<u> 3의2. 해사법원</u>
4. ~ 7. (생 략)	4. ~ 7. (현행과 같음)
②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	② 해사법원, 지방법원
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	
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원(支院)	
과 가정지원, 시법원 또는 군법	
원(이하 "시·군법원"이라 한	
다)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.	
다만,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	
지원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	
원으로 할 수 있다.	
③ 고등법원· <u>특허법원</u> ·지방	③ <u>특허법원·해사법</u>
법원·가정법원·행정법원· <u>회</u>	원회
<u>생법원과 지방법원</u> 및 가정법	생법원과 해사법원·지방법원
원의 지원, 가정지원, 시·군법	
원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	
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, 등기소	
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은	
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	
제5조(판사) ① (생 략)	제5조(판사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고등법원·특허법원·지방	②특허법원·해사법

법원·가정법원·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에 판사를 둔다.

#### ③ (생략)

제6조(직무대리) ① 대법원장은 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 ·특허법원·지방법원·가정법 원·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의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.

#### ② (생략)

- 제7조(심판권의 행사) ①·② (생략)
  - ③ 고등법원·특허법원 및 행 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. 다만, 행정법원의 경우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. ④·⑤ (생략)
- 제9조의2(판사회의) ① 고등법원
  ・특허법원・지방법원・가정법
  원・행정법원 및 회생법원과
 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
 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
  판사회의를 둔다.

	원
	③ (현행과 같음)
제	6조(직무대리) ①
	<u>특허법원·해사법원</u>
	,
	② (현행과 같음)
제	7조(심판권의 행사) ①·② (현
	행과 같음)
	③ <u>특허법원·해사법</u>
	원ㆍ행정법원 및 해사법원의 지
	원
	<u>해사법원, 행정법원 및</u>
	해사법원의 지원해사
	법원, 행정법원 및 해사법원의
	지원
	④·⑤ (현행과 같음)
제	9조의2(판사회의) ①
	<u>특허법원·해사법원</u>

#### ② (생략)

제10조(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)

- ① 고등법원·특허법원·지방법원·가정법원·행정법원 및 회생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무국을 두며,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사무국 외의 국(局)을 둘 수 있다.
  - ② (생략)
- ③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사 무국장 및 제1항에 규정된 사 무국 외의 국을 두고 있는 지 방법원의 사무국장은 법원이사 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 (補)하고, 고등법원 국장, 지방 법원 사무국장(제1항에 규정된 사무국 외의 국을 두고 있는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제외한 다) 및 국장, 가정법원 사무국 장, 행정법원 사무국장, 회생법 원 사무국장 및 대법원규칙으 로 정하는 지원의 사무국장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 으로 보하며, 과장은 법원부이 사관 • 법원서기관 • 법원사무관

제10조(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)
① <u>특허법원·해사법</u>
인
② (현행과 같음)
③ 고등법원의 사무국장, 특허
법원의 사무국장, 해사법원의
<u>사무국장</u>

② (현행과 같음)

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. ④ (생 략)

- 제14조(심판권) 대법원은 다음 각호의 사건을 종심(終審)으로 심판한다.
  -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·<u>특</u>
     <u>허법원</u>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 건
  - 2. 항고법원·고등법원 또는 항 소법원·<u>특허법원</u>의 결정·명 령에 대한 재항고사건
  - 3.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④ (현행과 같음)
제14조(심판권)
1 <u>특</u>
<u>허법원·해사법원</u>
2
<u>특허법원·해사법원</u>
3. (현행과 같음)
제2장의2 해사법원
제28조의5(해사법원장) ① 해사법
원에 해사법원장을 둔다.
② 해사법원장은 판사로 보한
<u>다.</u>
③ 해사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
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, 소속
<u>공</u> 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④ 해사법원에 대해서는 제26
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
을 준용한다.
<u> </u>
(部)를 둔다 <u>.</u>
<u> </u>

② 해사법원에 대해서는 제27

<신 설>

<신 설>

조제3항을 준용한다.

제28조의7(지원) ① 해사법원의 지원에 지원장을 둔다.

- ② 지원장은 판사로 보한다.
- ③ 지원장은 소속 해사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- ④ 해사법원의 지원에 부(部)를둘 수 있다.
- ⑤ 제4항에 따라 부를 두는 해사법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.

제28조의8(심판권) ① 해사법원은 다음의 해사사건을 심판한다.

- 1. 다음 각 목의 해사민사사건
  가. 「상법」 제4편제2장제4
  절(해상보험) 및 제5편(해
  상)의 규정이 적용되거나
  준용되는 민사사건(외국법
  이 준거법인 사건을 포함
  한다)
  - 나.
     「선원법」의 규정이 적

     용되거나 준용되는 민사사

     건

다.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

는 사건 외에 선박(건조 중인 선박을 포함한다. 이 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항해, 선박채권 또는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 권, 선박의 충돌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에 관한 민사 사건으로서 대법원규칙으 로 정하는 사건

2. 다음 각 목의 해사행정사건
가. 해사항고소송: 해양수산
부장관 및 해양경찰청장
(이하 "해사행정청"이라
하며, 해사행정청에는 법
령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
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
기관, 공공단체 및 그 기
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)
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
대하여 제기하는 소송

나. 해사당사자소송: 해사행 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 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,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

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. 다만,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경우에는 소관부서를 해양수산부, 해양경찰청으 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.

- 3.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 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
- 4.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법원 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
- ② 해사법원의 항소부는 해사 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의 판결·결정·명령 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.
- ③ 해사민사소송에 관하여는 「민사소송법」을 준용하고, 해사행정소송에 관하여는 「행정소송법」을 준용한다. 이 경우 「민사소송법」상 "지방법원"은 "해사법원"으로 보고, 「행정소송법」상 "행정법원"은 "해사법원"으로 본다.

제28조의9(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) ① 제28조의8에 규정 된 해사사건과 관련되는 소송 으로서 해사사건에 속하지 아

<신 설>

제44조(보직) ① (생 략)

② 사법연수원장, 고등법원장, 특허법원장, 법원행정처차장, 지방법원장, 가정법원장, 행정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.

니하는 소송(이하 "관련청구소송"이라 한다)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이를 해사법원으로 이송할수 있다.

② 해사소송의 당사자는 관련 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, 해사법원은 다른 법원 으로부터 관련청구소송이 이송 되어 온 경우 이를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.

제44조(보직) ① (현행과 같음)

(2)
특허법원장, 해사법원장,
<u>고등법원</u>
·특허법원 및 해사법원